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2. 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1. 1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11. 13.

다. 상정일자: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12.9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자치행정과장 이인숙】

가. 제안이유

대규모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과 배분을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,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단의 설치·운영, 구성(안 제3조~제4조)
- 단장 임무, 실무팀의 편성(안 제5조~제6조)
-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, 평가 및 기록(안 제7조~제8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가.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

- 본 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내용임.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2019년 12월 3일 일부개정 됨으로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자 모집, 운영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구청장으로 하여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본 제정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마포구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여부 검토

- 마포구에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수습·복구를 위하여 민간의 자원봉사 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사전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다. 주요 제정안 검토

- 안 제1조,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.

-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.
- 안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안 제5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6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실무팀에 대하여 크게 상황총괄팀, 활동관리팀, 활동지원팀 등 3개 팀으로 분류하고 있음.
- 안 제7조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재난상황정보 신속 제공 노력 및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 보고에 관한 사항임.
- 안 제8조는 자원봉사활동을 좀 더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라. 종합검토 의견

- 재난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사고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민관이 협력한 구체적 지원체계의 일관성이 필요하고, 재난은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, 언제 발생할지, 피해 규모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자원봉사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재난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상황에 맞는 대응과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본 제정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마포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